

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3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 반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07.20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지청장



1. 건 명 :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 독촉장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7.20.~2026.8.3.(15일간)
5. 반환금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산지청 지역협력과(4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6.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지청 지역협력과 남지윤(☎ 041-661-56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지청 공고 제2026-23호]

공시송달 대상자명단

연 번	사업자명	대표자명	금액	법인(주인)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	사업장 주소	서류의 명칭	송달불능 사유
1	참사랑****복지센터	오*석	218,000	480211-1***** 316-80-1****	충남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**	납입고지서(독촉장)	폐문부재

2026년 7월 20일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지청장

